

1. 재무회계 운영규정



복식부기·재무회계 운영규정의 의의

- 가 이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무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회계실무에 대해서 **통일된 처리방안을 제시**하는 것이다.

- 나 「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·재무회계 운영규정(이하 재무회계 운영규정)」은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회계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내용과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지방회계기준)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내용을 **실무적이며 상세하게 설명**한다.

1. 재무회계 운영규정



법령	법체계	주요 내용
지방회계법	법, 시행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자치단체 회계처리의 기준
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(지방회계기준)	부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재무제표의 작성기준
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정 (재무회계 운영규정)	훈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무회계과목(COA) 해설 세부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지침

2. 실무참고 예시 ①



차.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

- ① 토지의 구입비와 토지취득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포함한다.
- ② 토지구입비, 토지정지비, 지장물보상비, 철거공사비, 폐기물처리비, 이주 보상비, 영업손실보상비, 실농보상비, 신문광고료, 각종 수수료(지적측량비, 감정평가비, 문화재지표조사비, 소유권이전비용 등) 및 부담금(농지 전용부담금,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)을 포함한다.

2. 실무참고 예시 ②



마. 자산의 소유권에 따른 유형자산 구분처리시 유의할 사항이다.

- ③ 토지의 소유권은 민간에 속하나 시설물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(마을안길 포장, 마을광장 포장, 농로 포장, 임도 설치, 경지 정리 등)에는 그 성격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한다. 이 경우 관리과목으로 '사회기반시설토지'는 없되, '토지를제외한사회기반시설'만 관리된다.

2. 실무참고 예시 ③



(2) 대손충당금

가. 대손충당금이란 재정상태표의 미수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 금액을 표시하여 채권의 실질 평가액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.

※ 대손충당금은 미수채권 중 실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확률적인 개념임(추정액). 따라서 미수채권 중 일부에 대해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는 '불납결손'과 차이가 있음

- ① 재정상태표에는 해당 채권가액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그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.
- ② 실제 채권에 대한 결손이 발생했을 때는 채권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한다.